

감정평가서

| | |
|-------|--------------------------|
| 건명 | 김용준 소유물건(2024타경6563) |
|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
| 감정서번호 | B-2412-05-1001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转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신한감정평가법인 경남부산지사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종규

김종규



(주)신한감정평가 경남부산지사 지사장

민해수



| | | | | | | |
|----------------|--|-------------|------------|------------------|------------|--------------|
| 감정평가액 | 칠억오천이백일십오만오백원정 (₩752,150,500.-) | | | | | |
|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 | 감정평가목적 | 법원경매 | | |
| 채무자 | - | | 제출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6계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김용준 (2024타경6563)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 표시근거 | 귀 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 | | 2024.12.16 | 2024.12.16 | 2024.12.24 | |
| 감정 평가 내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토지 | 13,525 | 토지 | 13,525 | - | 457,425,800 |
| | 건물 | 199.5 | 건물 | 199.5 | 700,000 | 139,650,000 |
| | [제시외건 물] | (292.81) | 제시외건물 | (292.81) | - | 78,674,700 |
| | [제시외수 목] | (1492주) | 제시외수목 | (1492주) | - | 76,400,000 |
| 합계 | | | | | | ₩752,150,500 |
| 심사 확인 |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 | | | | |
| | 심사자 : 감정평가사 | | 민 | 해 | 수 | (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및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강제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 제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3. 감정평가 기준 가치 결정

본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5 조 제 1 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본건 내용에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기준 시점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 2 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본건의 가격 조사 완료일자인 2024년 12월 16일임.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0 조 제 1 항에 의거 2024.12.16 일자로 실지 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6. 감정평가의 조건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식

(1) 개요

평가방식은 대상물건의 성격·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이 있으며,

(2) 원가방식

원가방식의 경우 비용자료 및 사례 수집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 등에는 적합하나, 토지는 기본적으로 재생산이 불가능한 물건으로서 원가방식의 적용은 부적합하며, 건물은 객관적인 비용자료가 풍부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대체부동산과 유사한 가치형성의 원리로서 시장참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 원가방식의 적용이 적합하고,

(3) 수익방식

수익방식의 경우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방식으로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등 수익·비용자료와 사례의 수집이 곤란하고 토지와 건물에 귀속되는 수익의 산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불완전한 부동산시장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예측의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4) 비교방식

비교방식으로 토지와 건물 일괄한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일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배분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정확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추계가 곤란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 물건별 감정평가의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의 따라 대상물건의 토지, 건물 등 각 물건 개별로 감정평가하였음.

3) 평가대상 토지에 적용하는 평가방법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 규정하고 있고,
-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3) 평가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근에 소재하는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최근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 평가하는 비교방식이 가장 신뢰성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비교방식인 공시지가 기준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4) 평가대상 토지(1)의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하는 바 이를 토지의 감정평가시 개별요인중 행정적요인에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5)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일련번호(1~14, 16, 17)토지상에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시외수목이 소재하여 그 미치는 영향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 비교란에 별도로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6) 일련번호(14)토지상에 별첨사진 용지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매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음.
- (7) 일련번호(14)토지상에 울타리 형식으로 소재하는 남천, 영산홍등은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의 감정평가시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고,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호랑이, 사자, 양, 곰, 고래, 악어 등의 조각품 등은 감정평가에서 제외 하였음.

4) 평가대상 건물에 적용하는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5 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정액법을 적용 하였으며, 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의 검토는 생략하였음.

(2) 제시외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현상 및 관리상태 감안하여 잔존내용년수는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고, 면적사정은 실측면적에 의하였음.

(3) 평가대상 건물 일련번호(15)는 실지조사시 잠금장치로 인하여 주택의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외부에서 본 건물의 상태, 구조, 이용상태와 건축물현황도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음.

5) 수목의 감정평가에 적용하는 평가방식

평가대상 토지 기호(1~14, 16, 17) 지상에 소재하는 동백나무 등은 수종, 수령, 규격, 수량, 수익성, 관리상태 및 유사수목 등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2. 기타 참고사항

- 1) 본건 일련번호(15)는 공부상 “창고” 이나, 현황 2 층은 일부” 관리사 및 창고” 로 이용중이고, 복층 구조임.
- 2) 평가대상 일련번호(15)건물의 내부에는 엑기스생산을 위한 sus 반응탱크 및 수조형식의 탱크등이 수개 소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1. 감정평가대상 토지개요

| 일련 번호 | 소재지 (남해군)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도로 접면 | 형상및 지 세 |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 비고 |
|----------|--------------|--------|----------|-----------------|----------|----------|-----------|------------|--------------------------|--------|
| 1 | 창선면 지족리 | 184 | 전 | 693 | 전 | 계획 관리 | 소로 한면 | 부정형 평지 | 75,200 | 일반접도구역 |
| 2 | 설천면 금음리 | 1271 | 답 | 1084 | 답 | 자연 환경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4,850 | |
| 3 | 설천면 금음리 | 1272-1 | 답 | 1094 | 답 | 자연 환경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4,850 | |
| 4 | 설천면 금음리 | 1272-2 | 답 | 906 | 답 | 자연 환경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4,850 | |
| 5 | 설천면 금음리 | 1273 | 답 | 902 | 답 | 자연 환경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4,850 | |
| 6 | 설천면 금음리 | 1276 | 답 | 291 | 답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3,980 | |
| 7 | 설천면 금음리 | 1276-1 | 전 | 2374 | 전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3,980 | |
| 8 | 설천면 금음리 | 1276-3 | 전 | 496 | 전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3,980 | |
| 9 | 설천면 금음리 | 1276-4 | 전 | 496 | 전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3,980 | |
| 10 | 설천면 금음리 | 1276-5 | 전 | 208 | 전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3,980 | |
| 11 | 설천면 금음리 | 1280 | 답 | 99 | 답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3,980 | |
| 12 | 설천면 금음리 | 1282 | 답 | 883 | 답 | 자연 환경 | 맹지 | 세장형 급경사 | 4,050 | |
| 13 | 설천면 금음리 | 1284 | 답 | 1474 | 답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3,980 | |
| 14 | 설천면 금음리 | 1285 | 창고 용지 | 575 | 주거 기타 | 자연 환경 | 세로 (불) | 사다리 완경사 | 8,530 | |
| 16 | 설천면 금음리 | 1366 | 답 | 1289 | 답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4,100 | |
| 17 | 설천면 금음리 | 1368 | 답 | 661 | 답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급경사 | 4,1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대상 건물개요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1285 | | | | |
| | 주구조 | 일반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단층 | | | 주용도 | 창고시설 |
| 15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연면적 (㎡) | 용적율 (%) | 층수 (지하/지상) | 사용승인일 |
| | 199.5 | 34.7 | 199.5 | 34.7 | 지상1층 | 2012.10.2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 1 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1)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비교 공시지가표준지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되 각 호에 의함.

-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2) 실제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4)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안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공시기준일 : 2024.01.01]

| 기호 | 소재지 (남해군) | 면적 (㎡) | 지목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도로 교통 | 형상및 지 세 | 공시지가 (원/㎡) | 비교 |
|----|---------------------|-----------|----|----------|----------|-----------|------------|---------------|----|
| A | 창선면 지족리 278-4 | 632 | 전 | 전 | 계획 관리 | 소로 한면 | 사다리 평지 | 79,200 | - |
| B | 설천면 금음리 1283 | 797 | 답 | 과수원 | 자연 환경 | 세로 (불) | 부정형 완경사 | 4,860 | - |
| C | 설천면 덕신리 726 | 420 | 대 | 주거기타 | 자연 환경 | 세로(가) | 사다리 평지 | 27,700 | - |

*상기 표준지공시지가 A)는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그 밖의 요인산정시 및 개별토지의 감정평가시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1) 개요

평가대상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공시기준일과 기준시점 사이에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2) 지가변동률 (2024.01.01 ~ 2024.12.16) : 경상남도 남해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다만,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기간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
| 2024.01.01 ~ 2024.10.31 | 1.398% | 0.554% |
| 2024.10.01 ~ 2024.10.31 | 0.132% | 0.024% |
| 누 계 (2024.01.01~2024.12.16) | $(1+0.01389) \times (1+0.00132 \times 46/31) \approx 1.01588$ | $(1+0.00554) \times (1+0.00024 \times 46/31) \approx 1.00590$ |

3) 지역요인 비교 [감정평가실무기준 800.5.6.5]

지역요인이란 지역에 있어서 일반적 제요인과 지역의 자연적 제 조건을 합친 개념으로 이는 지역 특성의 바탕이 되고 지역의 가격수준을 형성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로서 지역요인이 동일함.(비교치 : 1.00)

4) 개별요인 비교

평가 대상토지의 공법상 용도지역과 실제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용도지대에 따른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자연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여 “조건단위” 별 격차율을 곱한 것으로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개별요인 비교항목 : 농경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접근 조건 | 교통의편부 | 취락과의 접근성 |
| | | 농로의 상태 |
| 자연 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 | 토양, 토질 | 토양, 토질의 양부 |
| | 관개, 배수 | 관개의 양부 |
| | | 배수의 양부 |
| | 재해의 위험성 | 수해의 위험성 |
| | | 기타 재해의 위험성 |
| 획지 조건 | 면적, 경사 등 | 면적 |
| | | 경사 |
| | 경작의 편부 |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
| | | 규제의 정도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개별요인-주택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가로 조건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폭, 포장, 보도 |
| | | 계통 및 연속성 |
| 접근 조건 |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 상가와의 접근성 |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
| |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익성 |
| 환경 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 | 자연환경 |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 인근환경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
| |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
|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 | |
| 획지 조건 |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
| | 방위, 고저 등 | 방위, 고저, 경사지 |
| | 접면도로상태 |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 용도지역, 지구, 구역등 |
| | |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등)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등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

| 일련 번호 | 표준지 기 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 요인 누계 | 비고 |
|----------|---|----------|----------|-----------------|----------|-----------|----------|----------------|----|
| 1 | A | - | 0.800 | 0.800 | 0.900 | 1.011 | 1.00 | 0.582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은 동일하나 재해의 위험성등 열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은 동일하나 비교표준지에는 접도구역저촉 면적이 과대하게 저촉되어 행정상 규제정도 등 우세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2 | B | - | 0.90 | 1.00 | 0.90 | 1.00 | 1.00 | 0.810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재해의 위험성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열세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3.4 | B | - | 0.90 | 1.00 | 0.95 | 1.00 | 1.00 | 0.855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재해의 위험성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열세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5.11 | B | - | 0.95 | 1.00 | 0.90 | 1.00 | 1.00 | 0.855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등은 동일함. 획지조건 : 형상, 경작의 편부 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6 | B | - | 1.05 | 1.00 | 0.80 | 1.00 | 1.00 | 0.840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등은 동일함. 획지조건 : 형상, 경작의 편부, 조성의 정도 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7 | B | - | 1.05 | 1.00 | 0.90 | 1.00 | 1.00 | 0.945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등은 동일함. 획지조건 : 형상, 조성의 정도,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일련 번호 | 표준지 기 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 요인 누계 | 비고 |
|----------|--|----------|----------|-----------------|----------|-----------|----------|----------------|----|
| 8,9 | B | - | 1.000 | 0.950 | 1.050 | 1.000 | 1.00 | 0.998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동일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재해의 위험성등 열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우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및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10 | B | - | 0.90 | 1.00 | 0.90 | 1.00 | 1.00 | 0.810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재해의 위험성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열세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12, 13 | B | - | 1.00 | 1.00 | 0.95 | 1.00 | 1.00 | 0.950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동일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재해의 위험성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열세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14 | C | 1.00 | 1.00 | 1.15 | 1.05 | 0.95 | 1.00 | 1.147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가로조건 : 가로의 폭, 구조등의 상태는 동일함. 접근조건 :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은 동일함. 환경조건 : 일조, 조망, 경관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접면너비, 지세, 형상 등 우세함. 행정적조건 : 용도지역은 동일하나 지목이 창고용지로 행정상 규제정도등 열세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 |
| 16 | B | - | 0.90 | 1.00 | 0.85 | 1.00 | 1.00 | 0.765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등은 동일함. 획지조건 : 형상, 경작의 편부, 조성의 정도 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17 | B | - | 0.85 | 1.00 | 0.80 | 1.00 | 1.00 | 0.680 | - |
| |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등은 동일함. 획지조건 : 형상, 조성의 정도,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평가대상 토지의 시장가격산정을 위하여 정상 지가수준과 공시지가와의 격차, 평가사례와의 균형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 정도 및 인근지역 평가사례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함.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제 2 항 제 5 호, 대법원판례 2007.7.12 선고 2006 두 11507, 2004.5.14 선고 2003 다 38207, 2003.7.25 선고 2002 두 505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999.6.21 토관 58342-471, 1999.5.20 기획 0100-725 등에서 인근 지역의 유사 토지 중에서 정상 거래사례나 평가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한 판결문 등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하였음.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액}}{\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지역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 선례 기호 | 소재지 (남해군) | 지목 | 면적 (㎡) | 용도 지역 | 도로 접면 | 토지단가 (원/㎡) | 기준시점 | 평가 목적 | 비 고 |
|----------|----------------------|----|-----------|----------|-----------|---------------|------------|----------|-----|
| 1 | 창선면 지족리 2***~* | 묘지 | 443.0 | 계획 관리 | 소로 한면 | 349,000 | 2023.10.04 | 담보 | - |
| 2 | 창선면 지족리 2** | 답 | 99.0 | 계획 관리 | 맹지 | 291,000 | 2023.10.04 | 담보 | - |
| 3 | 설천면 금음리 1***~* | 답 | 1094.0 | 자연 환경 | 세로 (불) | 23,000 | 2024.03.24 | 법원 경매 | - |
| 4 | 설천면 금음리 1*** | 창 | 575.0 | 자연 환경 | 세로 (불) | 30,000 | 2020.04.14 | 담보 | 본건 |
| 5 | 설천면 남양리 4***~* | 창 | 294.0 | 자연 환경 | 세로 (가) | 40,000 | 2020.08.23 | 법원 경매 | - |
| 6 | 설천면 문의리 1***~* | 창 | 3190 | 자연 환경 | 세로 (가) | 58,000 | 2020.03.02 | 담보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지역 실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KAIS]

| 사례 기호 | 소재지 (남해군) | 지목 | 용도 지역 | 토지단가 (원/㎡) | 기준시점 | 토지 면적(㎡) | 거래가액 (원) | 비고 |
|----------|--------------------|----------|----------|---------------|------------|-------------|-------------|-----------------------|
| 1 | 창선면 지족리 1** | 전 | 계획 관리 | 297,030 | 2022.06.10 | 202.00 | 60,000,000 | 토지만거래 |
| 2 | 창선면 지족리 1*** | 전 | 계획 관리 | 177,866 | 2022.03.28 | 506.00 | 90,000,000 | 토지만거래 |
| 3 | 창선면 지족리 1*** | 전 | 계획 관리 | 181,250 | 2020.08.14 | 192.00 | 34,800,000 | 토지만거래 |
| 4 | 설천면 금음리 1*** | 답 | 자연 환경 | 23,121 | 2021.03.11 | 519.00 | 12,000,000 | 토지만거래 |
| 5 | 설천면 금음리 1*** | 답 | 자연 환경 | 3,171 | 2020.09.09 | 1,577.00 | 5,000,000 | 토지만거래 |
| 사례 기호 | 소재지 (남해군) | 지목 | 용도 지역 | 토지단가 (원/㎡) | 기준시점 | 토지 면적(㎡) | 거래가액 (원) | 토지건물사례 |
| 6 | 창선면 서대리 1*** | 대 | 자연 환경 | 68,805 | 2023.07.11 | 414.00 | 187,000,000 | 토지가액 28,485,280 |
| 용도 | 구조 | 층수 | 면적 | 경제적 내용연수 | 경과 연수 | 재조달 원가 | 건물가액(원) | 비고 |
| 단독 주택 | 경량철골 구조 벽돌구조 | 지상1 층 | 145.16 | 50 | 8 | 1,300,000 | 158,514,720 | 사용승인일자: 2015.06.11 |

※ 토지단가(유효숫자 3 자리로 표시) = (거래가격 - 건물추정가격) ÷ 토지면적

※ 위 건물추정가격은 공부상 건물구조의 일반적인 재조달원가에 내용연수 및 잔존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① 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접근성,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 아래의 평가사례(2,3,6)를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격차율 산정

- 평가선례 기호 (2)/ 비교표준지와 (A)와 비교

| 소재지 (남해군) | 구분 | 기준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시산가액 (원/㎡)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 창선면 지족리 2** | 평가선례(2)기준 표준지가액 | 291,000 | - | 1.01972 | 1.00 | 1.146 | 340,062 | 4.226 |
| 창선면 지족리 278-4 | 표준지공시지가 (A)기준 현재가액 | 79,200 | - | 1.01588 | - | - | 80,458 | |
| 사정보정 | - | | | | | | | |
| * 인근 평가선례 시점수정 (2023. 10. 04~2024. 12. 16) - 경상남도 남해군 계획관리지역 : | | | | | | | 1.01972 | |
| * 공시지가표준지 시점수정 (2024. 01. 01 ~ 2024. 12. 16) - 경상남도 남해군 계획관리지역 : | | | | | | | 1.01588 | |
| 산정내역 | 지역요인 |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1.00) | | | | | | |
| | 개별요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누계 |
| | 격차율 | - | 1.05 | 1.05 | 1.05 | 0.99 | 1.00 | 1.146 |
| | 개별요인 |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가선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재해의 위험성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등 우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은 동일하나 비교표준지는 점도구역저측으로 행정상 규제 정도 등 열세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평가선례시점수정 : 경상남도 남해군 (23. 10. 04~24. 12. 16) (계획관리)

2023. 10. 01 ~ 2023. 10. 31 : 0.115

2023. 11. 01 ~ 2023. 11. 30 : 0.135

2023. 12. 01 ~ 2023. 12. 31 : 0.139

2024. 01. 01 ~ 2024. 10. 31 : 1.389

2024. 10. 01 ~ 2024. 10. 31 : 0.132

$$(1 + 0.00115 * 28/31) * (1 + 0.00135) * (1 + 0.00139) * (1 + 0.01389) * (1 + 0.00132 * 46/31) \approx 1.0197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평가선례 기호 (3)/ 비교표준지와 (B)와 비교

| 소재지 (남해군) | 구분 | 기준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시산가액 (원/㎡)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 설천면 금음리 1***~* | 평가선례(3)기준 표준지가액 | 23,000 | - | 1.00505 | 1.00 | 1.155 | 26,699 | 5.461 |
| 설천면 금음리 1283 | 표준지공시지가 (B)기준 현재가액 | 4,860 | - | 1.00590 | - | - | 4,889 | |
| 사정보정 | - | | | | | | | |
| * 인근 평가사례 시점수정(2024.03.22 ~ 2024.12.16) - 경상남도 남해군 자연환경지역 : | | | | | | | 1.00505 | |
| * 공시지가표준지 시점수정(2024.01.01 ~ 2024.12.16) - 경상남도 남해군 자연환경지역 : | | | | | | | 1.00590 | |
| 산정내역 | 지역요인 |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1.00) | | | | | | |
| | 개별요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누계 |
| | 격차율 | - | 1.10 | 1.00 | 1.05 | 1.00 | 1.00 | 1.155 |
| | 개별요인 |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가선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재해의 위험성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등 우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평가선례시점수정 : 경상남도 남해군 (24.03.22~24.12.16) (자보)

- 2024.03.01 ~ 2024.03.31 : 0.015
- 2024.04.01 ~ 2024.04.30 : 0.063
- 2024.05.01 ~ 2024.05.31 : 0.060
- 2024.06.01 ~ 2024.06.30 : 0.125
- 2024.07.01 ~ 2024.07.31 : 0.059
- 2024.08.01 ~ 2024.08.31 : 0.004
- 2024.09.01 ~ 2024.09.30 : 0.129
- 2024.10.01 ~ 2024.10.31 : 0.024

$$(1 + 0.00015 * 10/31) * (1 + 0.00063) * (1 + 0.00060) * (1 + 0.00125) * (1 + 0.00059) * (1 + 0.00004) * (1 + 0.00129) * (1 + 0.00024) * (1 + 0.00024 * 46/31)$$

≒ 1.0050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평가선례 기호 (6)/ 비교표준지와 (C)와 비교

| 소재지 (남해군) | 구분 | 기준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시산가액 (원/㎡)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 설천면 문의리 1***~* | 평가선례(6)기준 표준지가액 | 58,000 | - | 1.02935 | 1.00 | 0.846 | 50,508 | 1.812 |
| 설천면 덕신리 726 | 표준지공시지가 (C)기준 현재가액 | 27,700 | - | 1.00590 | - | - | 27,863 | |
| 사정보정 | - | | | | | | | |
| * 인근 평가선례 시점수정 (2020.03.02~2024.12.16) - 경상남도 남해군 자연환경지역 : | | | | | | | 1.02935 | |
| * 공시지가표준지 시점수정 (2024.01.01 ~ 2024.12.16) - 경상남도 남해군 자연환경지역 : | | | | | | | 1.00590 | |
| 산정내역 | 지역요인 |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1.00) | | | | | | |
| | 개별요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누계 |
| | 격차율 | 0.90 | 1.10 | 0.90 | 0.95 | 1.00 | 1.00 | 0.846 |
| | 개별요인 |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가선례 대비하여 가로조건 : 가로의 폭, 구조등의 상태는 열세함. 접근조건 :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은 우세함. 환경조건 : 일조, 조망, 경관등 열세함. 획지조건 : 면적, 접면너비, 지세, 형상 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평가선례시점수정 : 경상남도 남해군 (20.03.02~24.12.16) (자보)

2020.03.01 ~ 2020.03.31 : 0.047
 2020.04.01 ~ 2020.04.30 : 0.030
 2020.05.01 ~ 2020.05.31 : 0.061
 2020.06.01 ~ 2020.06.30 : 0.000
 2020.07.01 ~ 2020.07.31 : 0.032
 2020.08.01 ~ 2020.08.31 : 0.015
 2020.09.01 ~ 2020.09.30 : 0.059
 2020.10.01 ~ 2020.10.31 : 0.053
 2020.11.01 ~ 2020.11.30 : 0.052
 2020.12.01 ~ 2020.12.31 : 0.065
 2021.01.01 ~ 2021.12.31 : 1.019
 2022.01.01 ~ 2022.12.31 : 0.889
 2023.01.01 ~ 2023.12.31 : -0.00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01.01 ~ 2024.10.31 : 0.554

2024.10.01 ~ 2024.10.31 : 0.024

$$\begin{aligned}
 & (1 + 0.00047 * 30/31) * (1 + 0.00030) * (1 + 0.00061) * (1 + 0.00000) * (1 + 0.00032) \\
 & * (1 + 0.00015) * (1 + 0.00059) * (1 + 0.00053) * (1 + 0.00052) * (1 + 0.00065) * (1 \\
 & + 0.01019) * (1 + 0.00889) * (1 - 0.00007) * (1 + 0.00554) * (1 + 0.00024 * 46/31) \\
 & \approx 1.02935
 \end{aligned}$$

(5) 그 밖의 요인의 결정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적정성 검토

상기의 실거래가격 및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밖의 요인 산정치에 대하여 적정성이 담보됨.

②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은 토지 면적, 형상, 접면도로 상태 등에 따라 가격차등화를 보이며, 본건과 유사한 토지의 적정한 지가수준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분석됨.

| | |
|---------------------|--------------|
| 인근지역 계획관리(전) 지가수준 | 300,000원/㎡내외 |
| 인근지역 자연환경(전,답) 지가수준 | 30,000원/㎡내외 |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평가사례·거래사례 및 정상적인 지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비교표준지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 A | 4.22 |
| B | 5.46 |
| C | 1.8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 일련 번호 | 비교표준지 |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산출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
| | 기호 | 공시지가 (원/㎡) | | | | | | |
| 1 | A | 79,200 | 1.01588 | 1.00 | 0.582 | 4.22 | 197,607 | 197,600 |
| 2 | B | 4,860 | 1.00590 | 1.00 | 0.810 | 5.46 | 21,621 | 21,600 |
| 3 | B | 4,860 | 1.00590 | 1.00 | 0.855 | 5.46 | 22,822 | 22,800 |
| 4 | B | 4,860 | 1.00590 | 1.00 | 0.855 | 5.46 | 22,822 | 22,800 |
| 5 | B | 4,860 | 1.00590 | 1.00 | 0.855 | 5.46 | 22,822 | 22,800 |
| 6 | B | 4,860 | 1.00590 | 1.00 | 0.840 | 5.46 | 22,421 | 22,400 |
| 7 | B | 4,860 | 1.00590 | 1.00 | 0.945 | 5.46 | 25,224 | 25,200 |
| 8 | B | 4,860 | 1.00590 | 1.00 | 0.998 | 5.46 | 26,639 | 26,600 |
| 9 | B | 4,860 | 1.00590 | 1.00 | 0.998 | 5.46 | 26,639 | 26,600 |
| 10 | B | 4,860 | 1.00590 | 1.00 | 0.810 | 5.46 | 21,621 | 21,600 |
| 11 | B | 4,860 | 1.00590 | 1.00 | 0.855 | 5.46 | 22,822 | 22,800 |
| 12 | B | 4,860 | 1.00590 | 1.00 | 0.950 | 5.46 | 25,358 | 25,400 |
| 13 | B | 4,860 | 1.00590 | 1.00 | 0.950 | 5.46 | 25,358 | 25,400 |
| 14 | C | 27,700 | 1.00590 | 1.00 | 1.147 | 1.81 | 57,846 | 57,800 |
| 16 | B | 4,860 | 1.00590 | 1.00 | 0.765 | 5.46 | 20,420 | 20,400 |
| 17 | B | 4,860 | 1.00590 | 1.00 | 0.680 | 5.46 | 18,151 | 18,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산가액

| 일련 번호 | 공부면적 (㎡) | 토지단가 (원/㎡) | 시산가액(원) | 비 고 |
|----------|-------------|---------------|-------------|-----|
| 1 | 693.0 | 197,600 | 136,936,800 | |
| 2 | 1,084.0 | 21,600 | 23,414,400 | |
| 3 | 1,094.0 | 22,800 | 24,943,200 | |
| 4 | 906.0 | 22,800 | 20,656,800 | |
| 5 | 902.0 | 22,800 | 20,565,600 | |
| 6 | 291.0 | 22,400 | 6,518,400 | |
| 7 | 2,374.0 | 25,200 | 59,824,800 | |
| 8 | 496.0 | 26,600 | 13,193,600 | |
| 9 | 496.0 | 26,600 | 13,193,600 | |
| 10 | 208.0 | 21,600 | 4,492,800 | |
| 11 | 99.0 | 22,800 | 2,257,200 | |
| 12 | 883.0 | 25,400 | 22,428,200 | |
| 13 | 1,474.0 | 25,400 | 37,439,600 | |
| 14 | 575.0 | 57,800 | 33,235,000 | |
| 16 | 1,289.0 | 20,400 | 26,295,600 | |
| 17 | 661.0 | 18,200 | 12,030,200 | |
| 합계 | 13,525.0 | - | 457,425,8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의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함.

2) 거래사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1)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 ④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 ⑤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2) 거래사례의 선정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규모, 형상 등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거래사례(3,4,6)을 비교사례로 선정하며 토지단가를 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4)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함.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 기호 | 사례 기호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기간 | 시점수정치 |
|---------------|----------|-------------|------|-------------------------|---------|
| 1 | 3 | 경상남도 남해군 | 계획관리 | 2020.08.14 ~ 2024.12.16 | 1.12538 |
| 2~13 16,17 | 4 | | 자연환경 | 2021.03.11 ~ 2024.12.16 | 1.02354 |
| 14 | 6 | | | 2023.07.11 ~ 2024.12.16 | 1.00620 |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함.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함.

(1) 지역요인의 비교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의 비교

[개별요인 비교항목 : 농경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접근 조건 | 교통의편부 | 취락과의 접근성 |
| | | 농로의 상태 |
| 자연 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 | 토양, 토질 | 토양, 토질의 양부 |
| | 관개, 배수 | 관개의 양부 |
| | | 배수의 양부 |
| | 재해의 위험성 | 수해의 위험성 |
| 기타 재해의 위험성 | | |
| 획지 조건 | 면적, 경사 등 | 면적 |
| | | 경사 |
| | 경작의 편부 |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
| | | 규제의 정도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개별요인-주택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가로 조건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폭, 포장, 보도 |
| | | 계통 및 연속성 |
| 접근 조건 |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 상가와의 접근성 |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
| |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익성 |
| 환경 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 | 자연환경 |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 | 인근환경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
| |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
|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
| 획지 조건 |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
| | 방위, 고저 등 | 방위, 고저, 경사지 |
| | 접면도로상태 |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 용도지역, 지구, 구역등 |
| | |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등)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등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

| 일련 번호 | 사례 기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 요인 누계 | 비고 |
|----------|--|----------|----------|-----------------|----------|-----------|----------|----------------|----|
| 1 | 3 | - | 1.000 | 1.000 | 1.050 | 0.998 | 1.00 | 1.048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동일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일조, 통풍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우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은 동일하나 대상토지는 접도구역저촉으로 행정상 규제정도 등 열세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 |
| 2 | 4 | - | 1.05 | 1.05 | 0.90 | 1.00 | 1.00 | 0.992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3,4 | 4 | - | 1.05 | 1.05 | 0.95 | 1.00 | 1.00 | 1.047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 |
| 5,11 | 4 | - | 1.08 | 1.05 | 0.90 | 1.00 | 1.00 | 1.021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 |
| 6 | 4 | - | 1.15 | 1.05 | 0.80 | 1.00 | 1.00 | 0.966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7 | 4 | - | 1.15 | 1.05 | 0.90 | 1.00 | 1.00 | 1.087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일련 번호 | 사례 기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 요인 누계 | 비고 |
|----------|--|----------|----------|-----------------|----------|-----------|----------|----------------|----|
| 8,9 | 4 | - | 1.100 | 1.000 | 1.050 | 1.000 | 1.00 | 1.155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우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 |
| 10 | 4 | - | 1.10 | 1.00 | 0.90 | 1.00 | 1.00 | 0.990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12, 13 | 4 | - | 1.15 | 1.00 | 0.95 | 1.00 | 1.00 | 1.093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취락과의 접근성등 우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 관개, 배수등 동일함. 획지조건 : 면적, 지세, 형상,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우세함. | | | | | | | | |
| 14 | 6 | 0.90 | 0.90 | 1.20 | 0.95 | 0.95 | 1.00 | 0.877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가로조건 : 가로의 폭, 구조등의 상태는 열세함. 접근조건 :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열세함. 환경조건 : 일조, 조망, 경관등 우세함. 획지조건 : 면적, 접면너비, 지세, 형상 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용도지역은 동일한 지목이 참고용지로 행정상 규제정도등 열세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16 | 4 | - | 0.95 | 1.00 | 0.95 | 1.00 | 1.00 | 0.903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등은 동일함. 획지조건 : 형상, 경작의 편부, 조성의 정도 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 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 17 | B | - | 0.95 | 1.00 | 0.90 | 1.00 | 1.00 | 0.855 | - |
| | 평가대상 토지는 거래사례토지와 대비하여 접근조건 : 농로의 상태, 취락과의 접근성등 열세함. 자연조건 : 토양, 토질등은 동일함. 획지조건 : 형상, 조성의 정도, 경작의 편부등 열세함. 행정적조건 : 지목, 용도지역, 행정상 규제정도등 동일함.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등은 동일하나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열세함. |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산출 및 결정

| 일련 번호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산출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
| 1 | 181,250 | 1.000 | 1.12538 | 1.000 | 1.048 | 213,766 | 214,000 |
| 2 | 23,121 | 1.000 | 1.02354 | 1.000 | 0.992 | 23,476 | 23,500 |
| 3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047 | 24,778 | 24,800 |
| 4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047 | 24,778 | 24,800 |
| 5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021 | 24,162 | 24,200 |
| 6 | 23,121 | 1.000 | 1.02354 | 1.000 | 0.966 | 22,861 | 22,900 |
| 7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087 | 25,724 | 25,700 |
| 8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155 | 27,333 | 27,300 |
| 9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155 | 27,333 | 27,300 |
| 10 | 23,121 | 1.000 | 1.02354 | 1.000 | 0.990 | 23,429 | 23,400 |
| 11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021 | 24,162 | 24,200 |
| 12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093 | 25,866 | 25,900 |
| 13 | 23,121 | 1.000 | 1.02354 | 1.000 | 1.093 | 25,866 | 25,900 |
| 14 | 68,805 | 1.000 | 1.00620 | 1.000 | 0.877 | 60,716 | 60,700 |
| 16 | 23,121 | 1.000 | 1.02354 | 1.000 | 0.903 | 21,370 | 21,400 |
| 17 | 23,121 | 1.000 | 1.02354 | 1.000 | 0.855 | 20,234 | 20,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일련 번호 | 공부면적 (㎡) | 토지단가 (원/㎡) | 시산가액(원) | 비 고 |
|----------|-------------|---------------|-------------|-----|
| 1 | 693.0 | 214,000 | 148,302,000 | |
| 2 | 1,084.0 | 23,500 | 25,474,000 | |
| 3 | 1,094.0 | 24,800 | 27,131,200 | |
| 4 | 906.0 | 24,800 | 22,468,800 | |
| 5 | 902.0 | 24,200 | 21,828,400 | |
| 6 | 291.0 | 22,900 | 6,663,900 | |
| 7 | 2,374.0 | 25,700 | 61,011,800 | |
| 8 | 496.0 | 27,300 | 13,540,800 | |
| 9 | 496.0 | 27,300 | 13,540,800 | |
| 10 | 208.0 | 23,400 | 4,867,200 | |
| 11 | 99.0 | 24,200 | 2,395,800 | |
| 12 | 883.0 | 25,900 | 22,869,700 | |
| 13 | 1,474.0 | 25,900 | 38,176,600 | |
| 14 | 575.0 | 60,700 | 34,902,500 | |
| 16 | 1,289.0 | 21,400 | 27,584,600 | |
| 17 | 661.0 | 20,200 | 13,352,200 | |
| 합계 | 13,525.0 | - | 484,110,3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합리성 검토 및 시산가액의 결정

1) 각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 평가방법 | 시산가액(원) | 비고 |
|---------|-------------|----|
| 공시지가기준법 | 457,425,800 | - |
| 거래사례비교법 | 484,110,300 | - |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평가대상 토지의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3)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 | |
|----------|-------------|
| 감정평가액(원) | 457,425,8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건물가액의 산출근거

1. 산출개요

대상건물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 건물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인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의 구조, 시공의 정도, 관리상태등의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 발간 건물신축단가표 및 재조달원가 자료집상의 표준단가와 건물특성 등을 감안한 보정단가로 산정한 후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적용단가를 산정함.

<평가대상건물의 개요>

| | | | | | |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1285 | | | | |
| | 주구조 | 일반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단층 | | 주용도 | 창고시설 | |
| 15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연면적 (㎡) | 용적율 (%) | 층수 (지하/지상) | 사용승인일 |
| | 199.5 | 34.7 | 199.5 | 34.7 | 지상1층 | 2012.10.24 |

2. 보정단가 산정 및 재조달원가 결정

1) 표준단가

[출처: 한국부동산원 2023 건물신축단가표]

| 일련번호 | 분류번호 | 용도 | 구조 | 내용년수 |
|------|----------|-----------|------------------------|---------------|
| 15 | 5-1-6-10 | 일반창고 | 철골조, 철골지붕틀 칼라피복철판잇기 | 35 (30~40) |
| | 급수 | 1급 | 2급 | - |
| | 표준단가 | 1,011,000 | 876,000 | - |

2) 보정단가의 산정

본건 건물에 구비된 전기, 전등 등의 부대설비 내역을 종합 참작하여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결정함.

| 일련번호 | 전기설비 | 위생설비 | 난방설비 | 승강기설비 | 기타설비 (태양광설비) | |
|------|------|------|------|-------|-----------------|---|
| 15 | 창고시설 | ○ |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참조하되 본 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설비현황, 동·유사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거래동향 및 본건의 현상,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단가를 결정하고, 기타 부대설비의 존재유무 및 이에 따른 보정단가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1 건물신축단가표]

| 일련 번호 | 표준단가 (원/㎡) | 부대설비단가 (원/㎡) | 재조달원가 (원/㎡) | 비고 |
|------------|-------------------|--------------|-------------|----|
| 15 | 1,000,000 | 표준단가에 포함 | 1,000,000 | - |
| 보정단가 (원/㎡) | 표준단가에 포함하여 결정하였음. | | | |

3.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 1) 감가수정이란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기능적·경제적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감가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그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치를 적정화하는 작업임.
- 2) 감가수정방법으로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되, 이에 따른 감가수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는 바, 본건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정액법을 적용하였음.

| 일련 번호 | 재조달원가 (원/㎡) | 사용승인일 | 경제적 내용연수 | 잔존내용연수 | | | 적용단가 (원/㎡) |
|-------|-------------|------------|----------|----------|----------|-----------|------------|
| | | | | 경년감가 적용시 | 관찰감가 적용시 | 적용잔존 내용연수 | |
| 15 | 1,000,000 | 2012.10.24 | 40 | 12 | - | 28 | 7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건물가액의 결정

| 일련 번호 | 적용단가 (원/㎡) | 면적(㎡) | 감정평가액(원) | 비고 |
|-----------|---------------|--------|-------------|----|
| 15 | 700,000 | 199.50 | 139,650,000 | |
| 감정평가액(합계) | | 199.50 | 139,650,000 | |

5. 미등기 제시외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5 조에 따라 미등기 제시외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관 15-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하였음.

2) 제시외건물 개요

| 기호 | 물건 종류 | 소재지 (남해군) | 구조 | 층수 | 실측면적 (㎡) | 용도 | 신축일자 | 비고 |
|------|----------|--------------------|---------------------|----|-------------|------------|------|----|
| 15-1 | 건물 | 설천면 금음리 1285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2층 | 199.50 | 관리사, 창고 | 미상 | - |
| 15-2 | 건물 | | 판넬조판넬지붕 | 2층 | 3.30 | 보일러실 | 미상 | - |
| 15-3 | 건물 | | 각관조위투명PVC | 단층 | 22.35 | 가추 | 미상 | - |
| 15-4 | 건물 | | 각관조위합판지붕 | 단층 | 34.22 | 가추 | 미상 | - |
| 15-5 | 건물 | | 각관조위목재 및 투명PVC지붕 | 단층 | 20.90 | 통로 및 현관 | 미상 | - |
| 15-6 | 건물 | | 철재올다리위 목재천막지붕 | 단층 | 12.54 | 견사 | 미상 | - |

3) 건물평가액의 산출근거

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람.

4) 기타사항

해당사항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I. 수목가액의 산출근거

1. 개요

수목은 수형이 보통인 매실나무 등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됨.

2. 수목의 감정평가

평가대상 토지(1~14, 16, 17)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수종, 수고, 수폭 등을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비준가액으로 결정하였음.

3. 평가액 산출근거

별첨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바람.

VII. 감정평가액의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상기 감정평가선례, 거래사례,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경기동향,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감정평가액 결정

| 구 분 | 면적 (㎡) | 결정단가 (원) | 감정평가액(원) | 비고 |
|-----------|-----------|-------------|-------------|----|
| 토지 | 13,525.0 | - | 457,425,800 | - |
| 건물 | 199.50 | 700,000 | 139,650,000 | - |
| (제시외건물) | (292.81) | - | 78,674,700 | - |
| (제시외수목) | (1492주) | 일괄 | 76,400,000 | - |
| 감정평가액(합계) | | | 752,150,500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1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 184 | 전 | 계획관리지역 | 693 | 693 | 197,600 | 136,936,800 | |
| 2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1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1,084 | 1,084 | 21,600 | 23,414,4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16,314,000 |
| 3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2-1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1,094 | 1,094 | 22,800 | 24,943,2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18,833,800 |
| 4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2-2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906 | 906 | 22,800 | 20,656,8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14,396,000 |
| 5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3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902 | 902 | 22,800 | 20,565,6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14,332,000 |
| 6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6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291 | 291 | 22,400 | 6,518,4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4,542,000 |
| 7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6-1 | 전 | 자연환경보전 지역 | 2,374 | 2,374 | 25,200 | 59,824,8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53,987,000 |
| 8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6-3 | 전 | 자연환경보전 지역 | 496 | 496 | 26,600 | 13,193,6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10,444,000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9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6-4 | 전 | 자연환경보전 지역 | 496 | 496 | 26,600 | 13,193,6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2,100,000 |
| 10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6-5 | 전 | 자연환경보전 지역 | 208 | 208 | 21,600 | 4,492,8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3,130,000 |
| 11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80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99 | 99 | 22,800 | 2,257,2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1,572,000 |
| 12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82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883 | 883 | 25,400 | 22,428,2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15,576,000 |
| 13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84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1,474 | 1,474 | 25,400 | 37,439,6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26,001,000 |
| 14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85 | 창고용지 | 자연환경보전 지역 | 575 | 575 | 57,800 | 33,235,0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27,600,000 |
| 15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577-68 | 1285 위지상 | 창고시설 | 일반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단층 | 199.5 | 199.5 | 700,000 | 139,650,000 | 1,000,000 x 28/40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16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366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1,289 | 1,289 | 20,400 | 26,295,6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23,166,000 |
| 17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368 | 답 | 자연환경보전 지역 | 661 | 661 | 18,200 | 12,030,200 | 수목으로인해 영향받는토지 가액 ₩8,964,000 |
| 소 계 | | | | | | | | ₩597,075,800 | |
| [제시외건물] | | | | | | | | | |
| 15-1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85 위지상 | 관리사 및 창고 | 일반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2층 | (199.5) | 199.5 | 315,000 | 62,842,500 | 450,000 x 28/40 |
| 15-2 | " | " | 보일러실 | 판넬조판넬지붕 2층 | (3.30) | 3.30 | 210,000 | 693,000 | 300,000 x 28/40 |
| 15-3 | " | " | 가추 | 각관조위투명 PVC단층 | (22.35) | 22.35 | 120,000 | 2,682,000 | 240,000 x 10/20 |
| 15-4 | " | " | 가추 | 각관조위합판 지붕단층 | (34.22) | 34.22 | 135,000 | 4,619,700 | 270,000 x 10/20 |
| 15-5 | " | " | 통로 및 현관 | 각관조위목재 및 투명PVC 지붕단층 | (20.90) | 20.90 | 315,000 | 6,583,500 | 450,000 x 28/40 |
| 15-6 | " | " | 견사 | 철재울타리위 목재천막지붕 단층 | (12.54) | 12.54 | 100,000 | 1,254,000 | 200,000 x 10/20 |
| 소 계 | | | | | | | | ₩78,674,700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2-1 | [제시외수목]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1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외2종 | (60주) | 60주 | 일괄 | 8,500,000 | |
| 3-1 | " | 1272-1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외1종 | (40주) | 40주 | 일괄 | 6,000,000 | |
| 4-1 | " | 1272-2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외1종 | (35주) | 35주 | 일괄 | 5,500,000 | |
| 5-1 | " | 1273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외1종 | (40주) | 40주 | 일괄 | 5,500,000 | |
| 6-1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 1276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외4종 | (485주) | 485주 | 일괄 | 9,500,000 | |
| 7-1 | " | 1276-1 위지상 | 수목 | 은목서외6종 | (40주) | 40주 | 일괄 | 5,600,000 | |
| 8-1 | " | 1276-3 위지상 | 수목 | 은목서외1종 | (16주) | 16주 | 일괄 | 2,700,000 | |
| 9-1 | " | 1276-4 위지상 | 수목 | 은목서외1종 | (14주) | 14주 | 일괄 | 2,100,000 | |
| 10-1 | " | 1276-5 위지상 | 수목 | 향나무외1종 | (15주) | 15주 | 일괄 | 2,750,000 | |
| 11-1 | " | 1280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 | (5주) | 5주 | 일괄 | 750,000 | |
| 12-1 | " | 1282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외3종 | (45주) | 45주 | 일괄 | 6,000,000 | |
| 13-1 | " | 1284 위지상 | 수목 | 감나무외9종 | (646주) | 646주 | 일괄 | 10,900,000 | |
| 14-1 | " | 1285 위지상 | 수목 | 단풍나무외3종 | (11주) | 11주 | 일괄 | 4,600,000 | |
| 16-1 | " | 1366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 | (20주) | 20주 | 일괄 | 3,000,000 | |
| 17-1 | " | 1368 위지상 | 수목 | 매실나무 | (20주) | 20주 | 일괄 | 3,000,000 | |
| 소 계 | | | | | | | | ₩76,400,000 | |
| 합 계 | | | | | | | | ₩752,150,500.-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토지(1)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소재 "지족삼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평가대상 토지(2~13, 16, 17)는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소재 "금음신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답등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평가대상 토지(1)이 소재하는 서측 근거리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평가대상 토지(2~14, 16, 17)이 소재하는 남동측 원거리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평가대상 토지(1~14, 16, 17)는 대부분 부정형토지로서 동측, 남동측 하향의 경사지대에 위치하고 (1~13, 16, 17)은 "전"으로, (14)는 "창고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평가대상 토지(1)은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평가대상 토지(2~14, 16, 17)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폭2~3미터의 내부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폭2~3미터의 사도에 접하는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평가대상 토지(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20)(500미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토지(2,5)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토지(3,4)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토지(6,7,8,9,10,11,12,13,14,15,16,17)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평가대상 토지(2~14, 16, 17)지상에는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과수목등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15) : 일반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단층건으로 사용승인일은 2012.10.24일로서
 외벽 : 전면 통유리, 측면 벽돌조적 및 미장합판, 후면 샌드위치판넬마감
 내벽 : 샌드위치판넬, 벽지도배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

일련번호(15-1) : 경량철골조판넬지붕 2층건으로
 외벽 : 전면 통유리, 측면 벽돌조적 및 미장합판, 후면 샌드위치판넬마감
 내벽 : 샌드위치판넬, 벽지도배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

일련번호(15-2) : 판넬조판넬지붕 2층건으로
 내외벽 : 판넬붙임
 창호 : 새시창호,

일련번호(15-3) : 각관조위 투명PVC 단층건으로
 벽체없음,

일련번호(15-4) : 각관조위 합판지붕 단층건으로
 벽체없음,

일련번호(15-5) : 각관조위 목재 및 투명PVC지붕 단층건으로
 벽체없음.

일련번호(15-6) : 철재울타리위 목재천막지붕 단층건으로
 내외벽 : 목재마감.

(2) 이용상태

일련번호(15) : 창고 및 주택으로,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일련번호(15-1) : 관리사 및 창고로,
 일련번호(15-2) : 보일러실로,
 일련번호(15-3) : 가추로,
 일련번호(15-4) : 가추로,
 일련번호(15-5) : 통로 및 현관으로,
 일련번호(15-6) : 견사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15) : 위생 및 급배수시설, 1층 주택부분은 전기판빌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일련번호(15-1) : 위생 및 급배수시설,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5)는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 "일부주택" 으로 이용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실지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및 기타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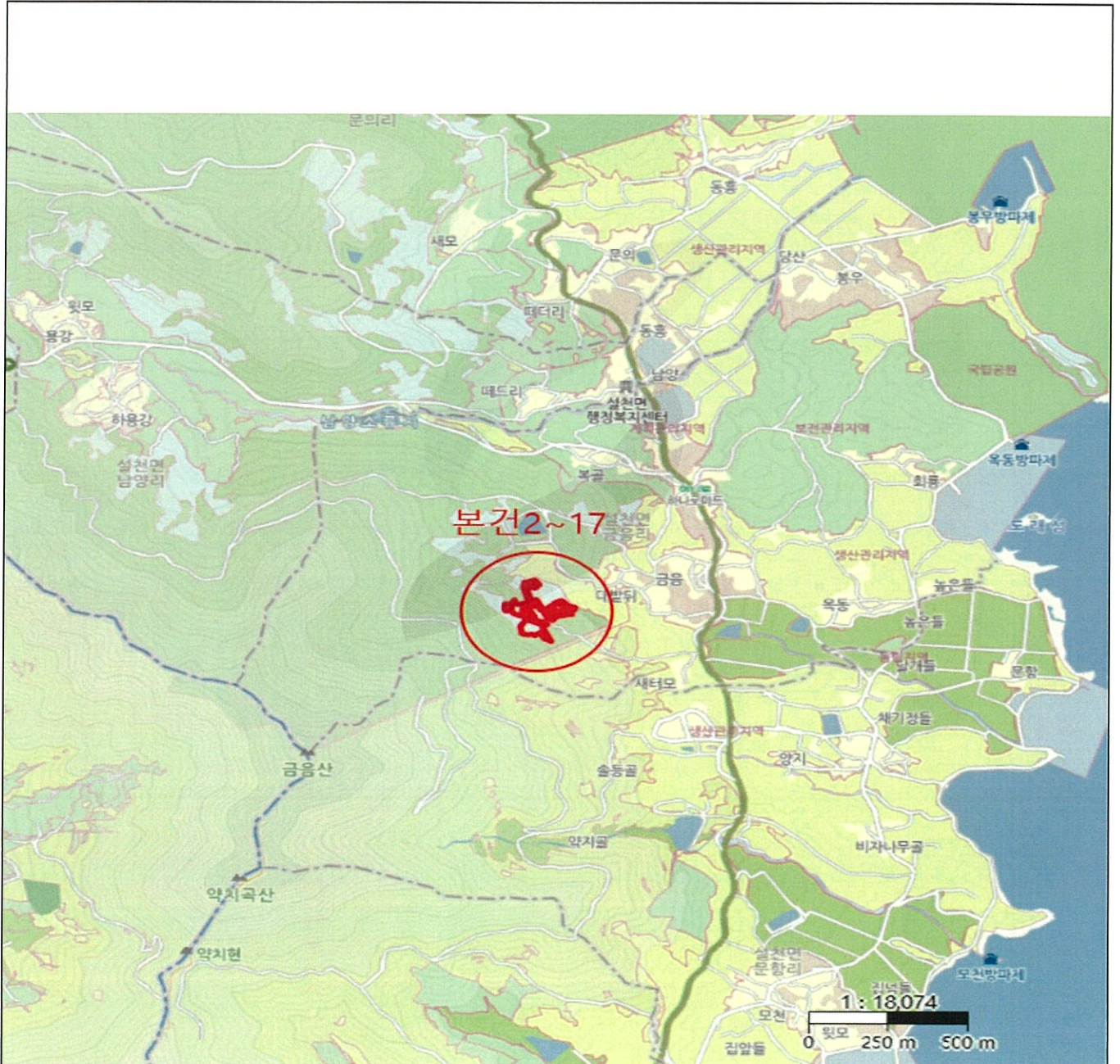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외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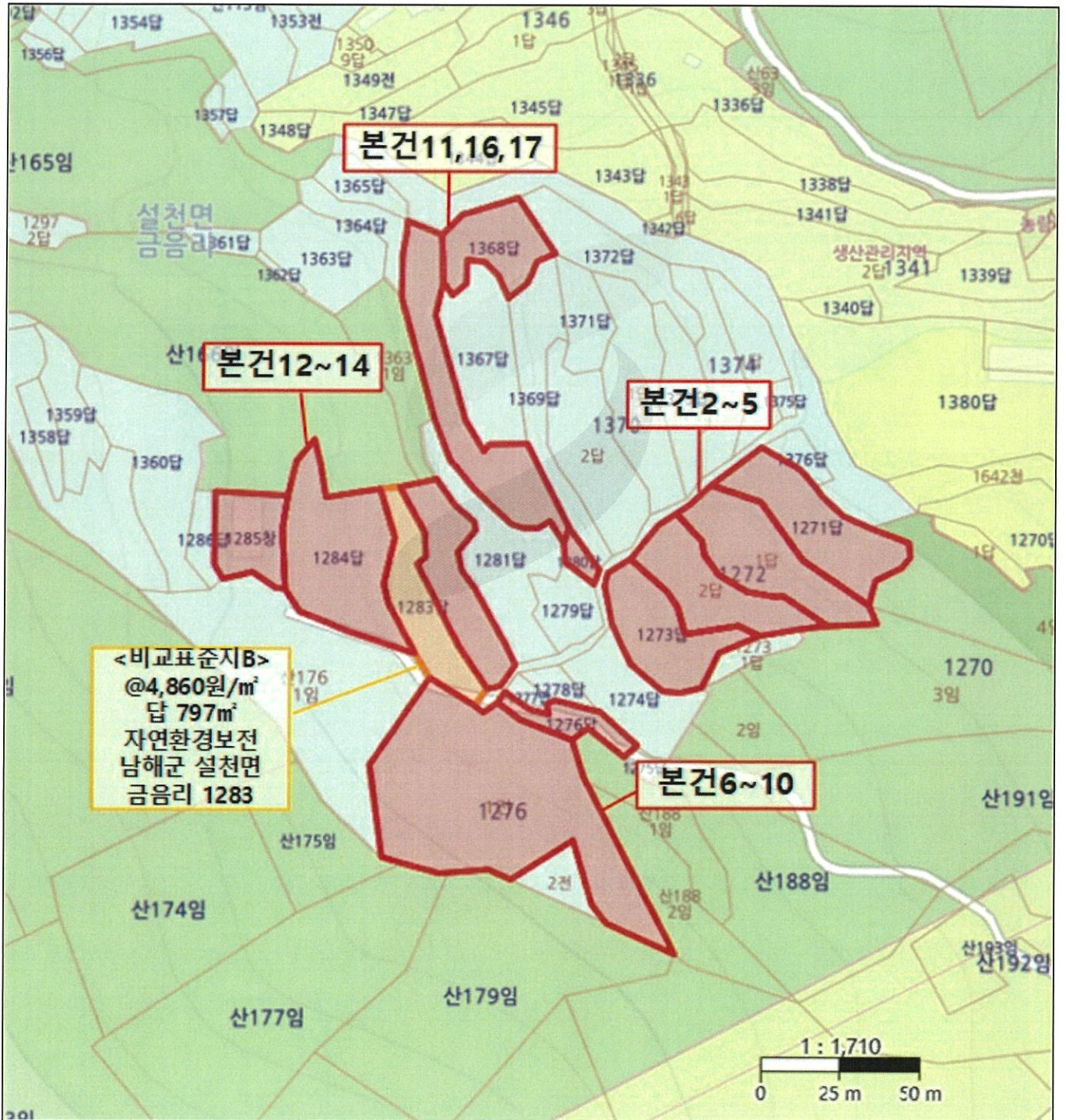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84외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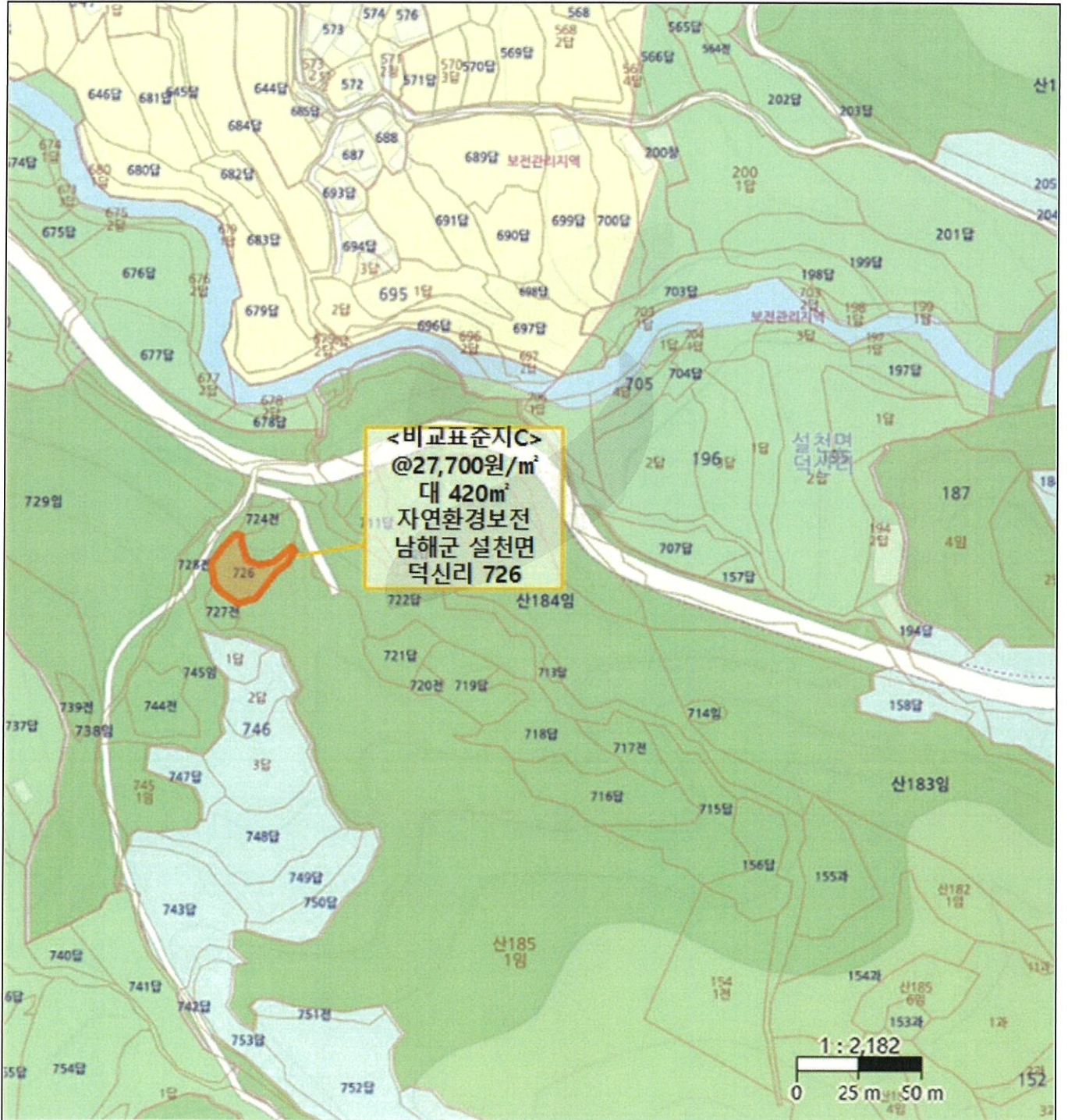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84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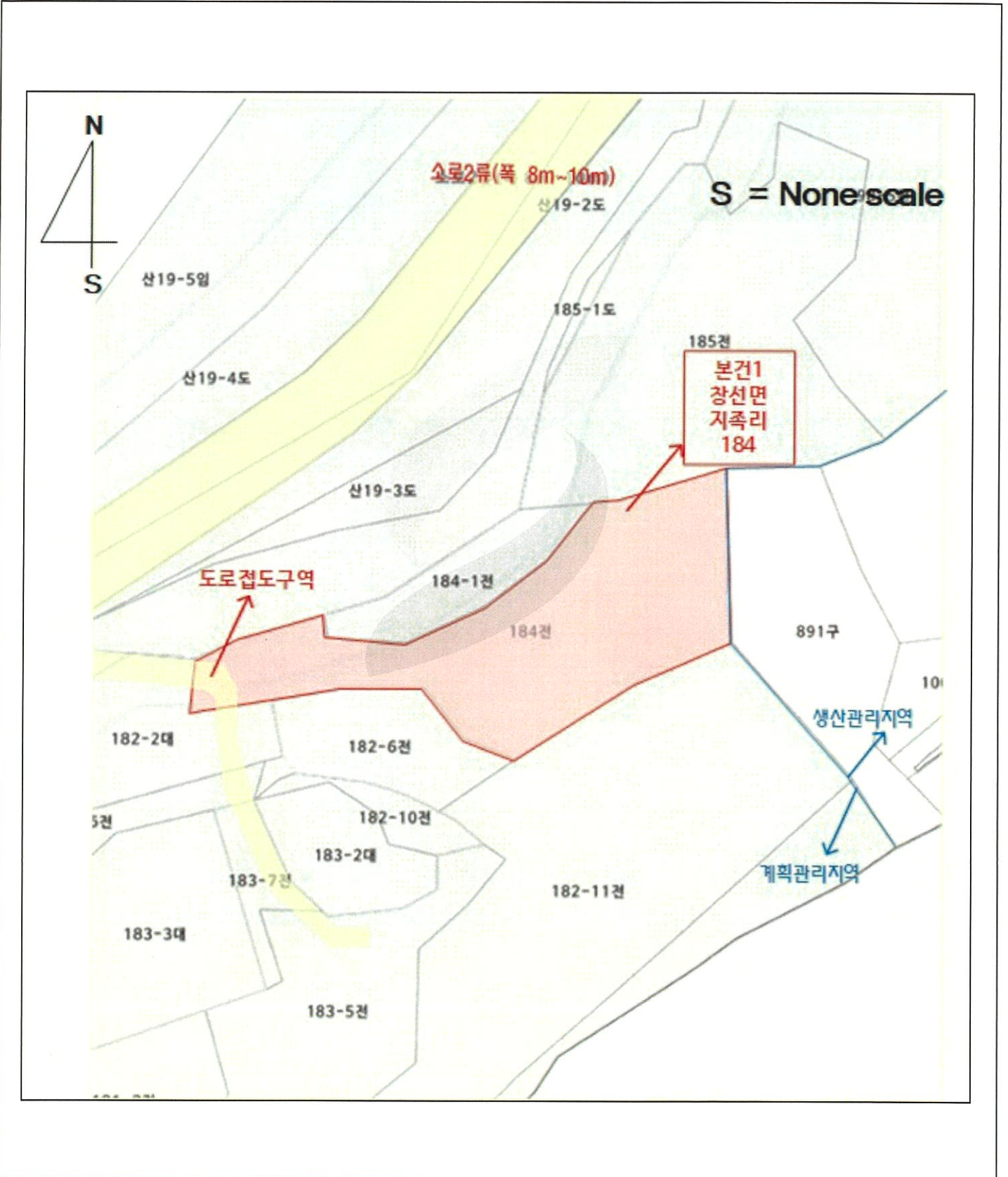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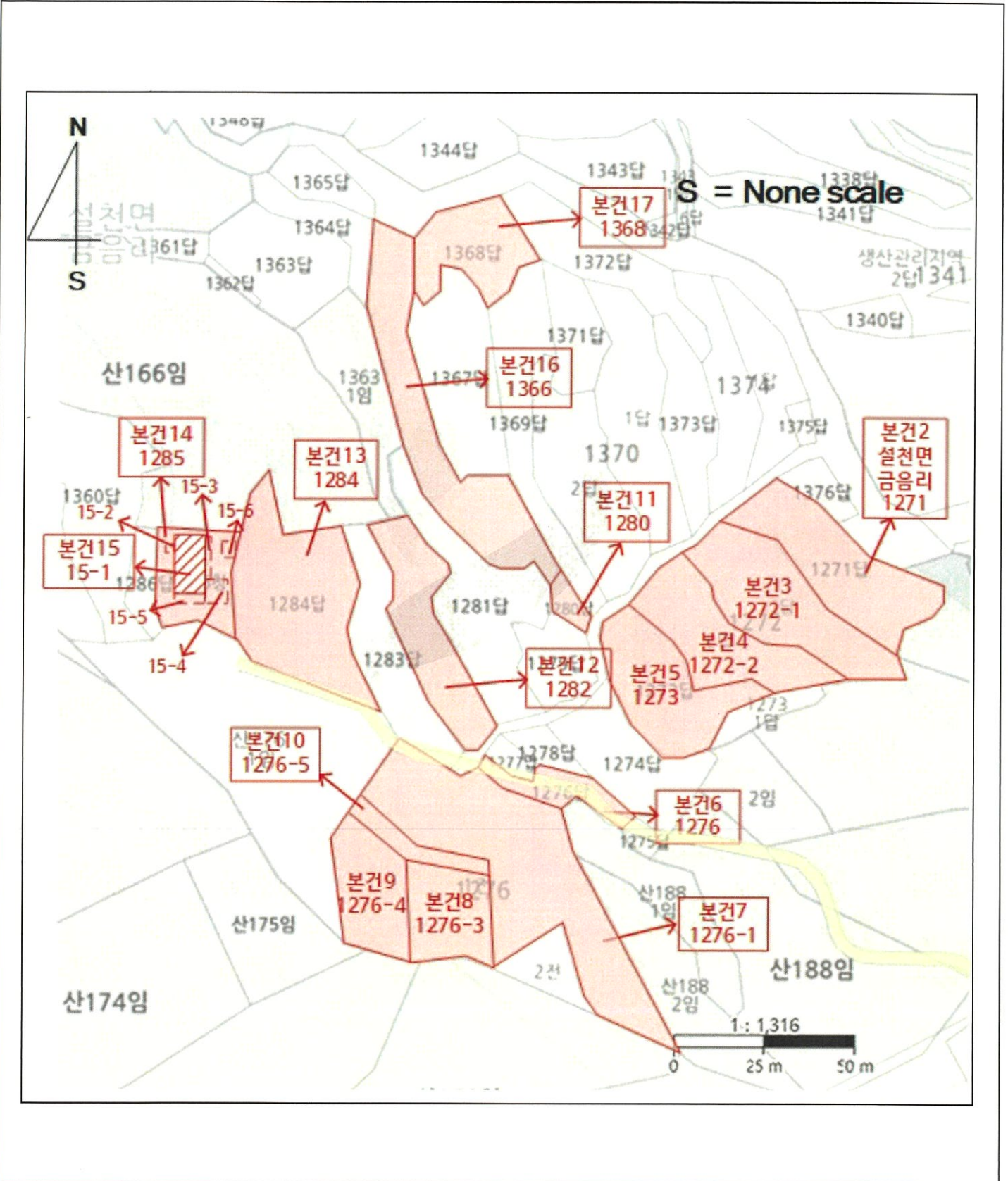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84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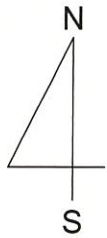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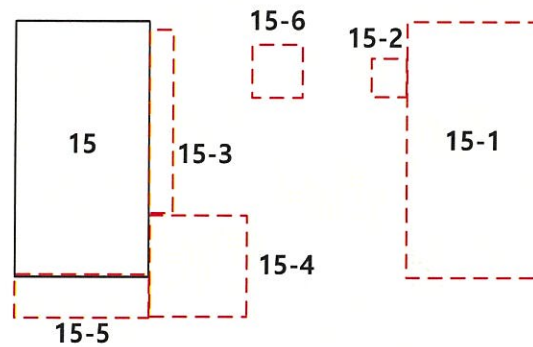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S = None scale



제시건물

15) 일반철골구조 기타(강판)지붕 단층 창고시설 $9.5 \times 21 \approx 199.5\text{m}^2$

제시외건물

15-1)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관리사, 창고 $9.5 \times 21 \approx 199.5\text{m}^2$

15-2) 판넬조 판넬지붕 2층 보일러실 $1.5 \times 2.2 \approx 3.30\text{m}^2$

15-3) 각관조위투명pvc 단층 가추 $14.9 \times 1.5 \approx 22.35\text{m}^2$

15-4) 각관조위 합판지붕 단층 가추 $5.8 \times 5.9 \approx 34.22\text{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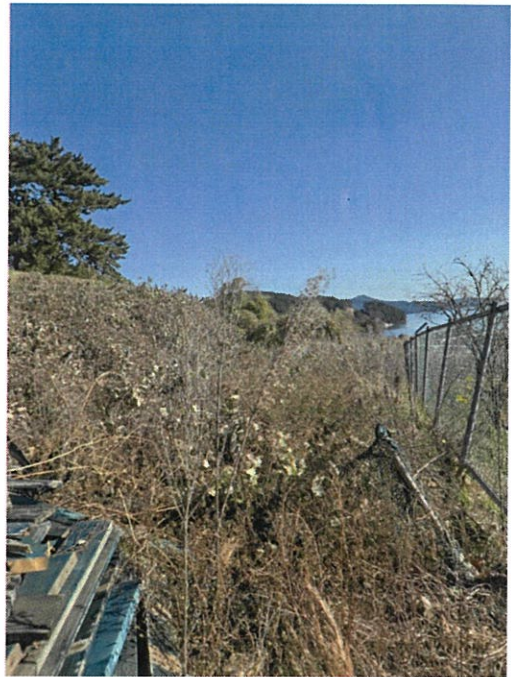
15-5) 각관조위목재 및 투명pvc지붕 단층 통로및현관 $9.5 \times 2.2 \approx 20.90\text{m}^2$

15-6) 철재울타리위 목재천막지붕 단층 견사 $3.3 \times 3.8 \approx 12.54\text{m}^2$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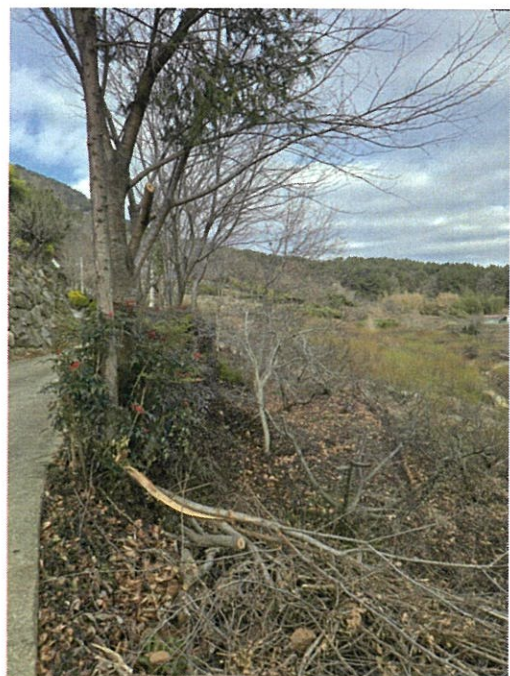
본 건(1) 토지 진입로



본 건(1) 토지의 전경



본 건(2) 토지의 전경 및 매실나무 등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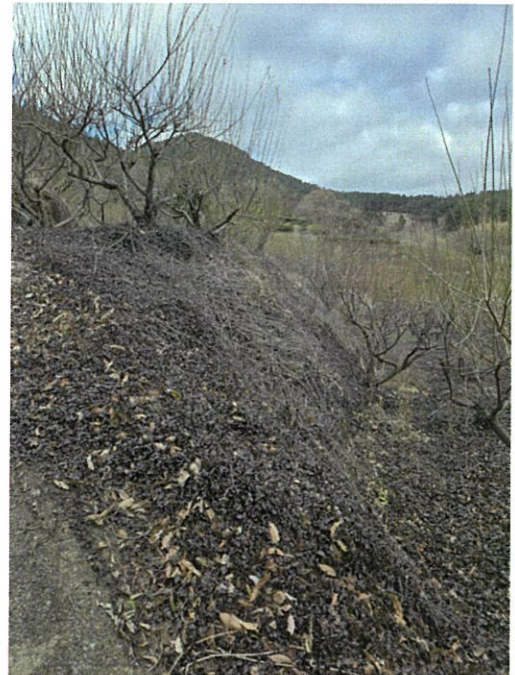


본 건(4) 토지의 전경 및 매실나무 등 수목

사 진 용 지



본 건(5)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본 건(6)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본 건(7)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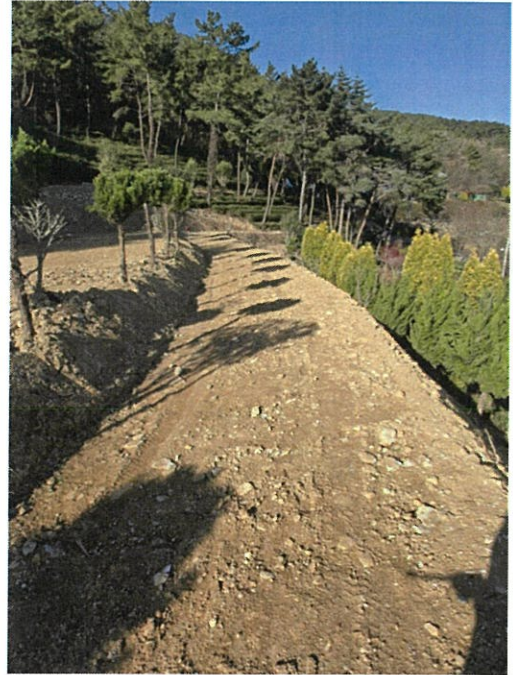


본 건(8)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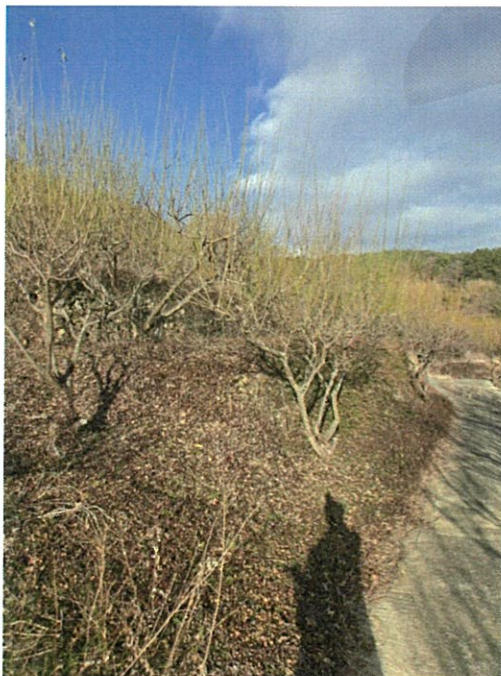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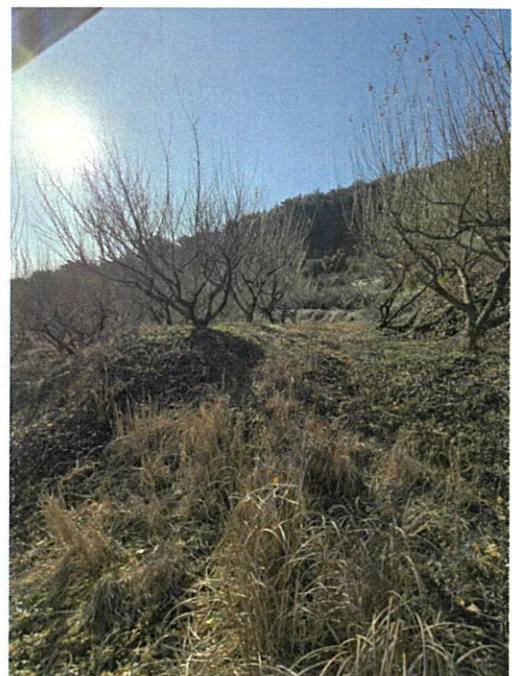
본 건(9)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본 건(10)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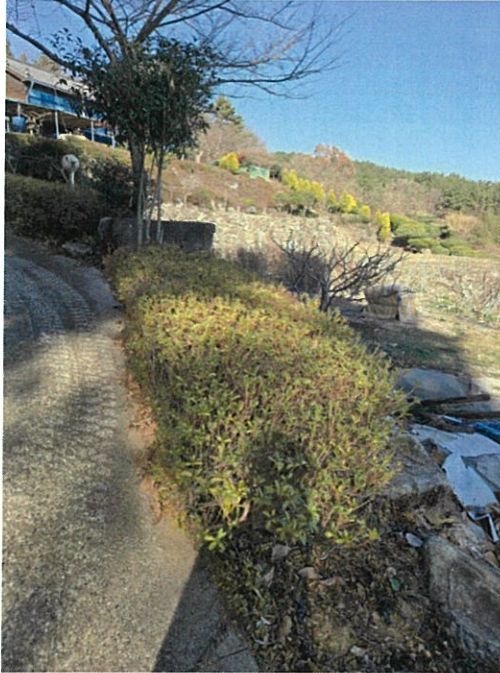


본 건(11)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본 건(12)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사 진 용 지



본 건(13)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본 건(14) 토지상 남천 등 수목



본 건(15)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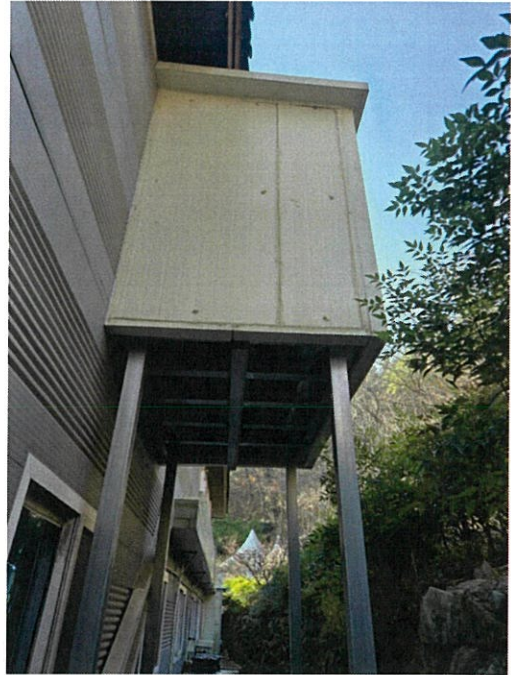


본 건(15), 제시외건물(15-1,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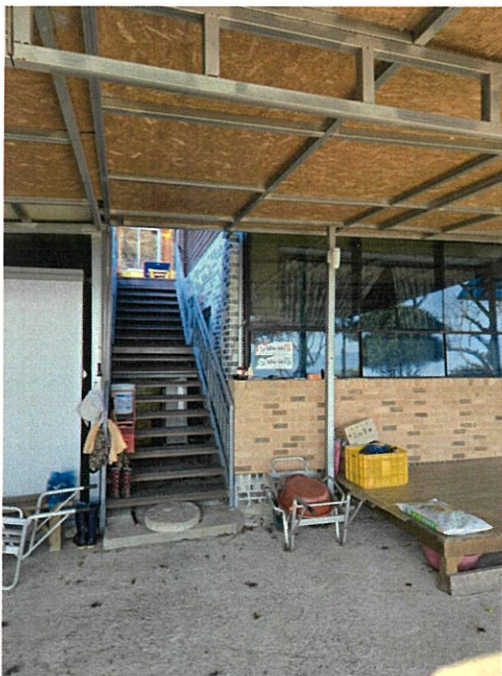
사진용지



본 건(15), 제시외건물(15-1, 15-3)



제시외건물(15-2)



제시외건물(15-4,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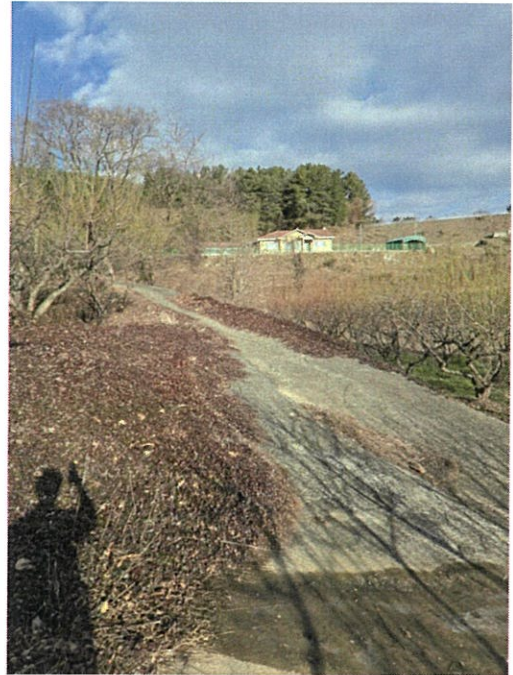


제시외건물(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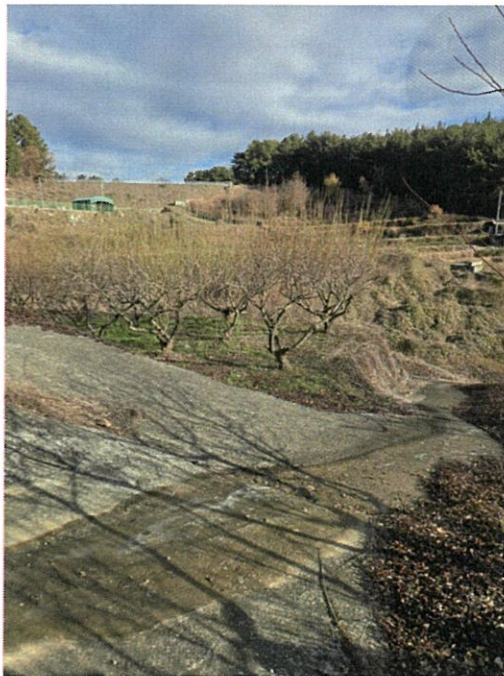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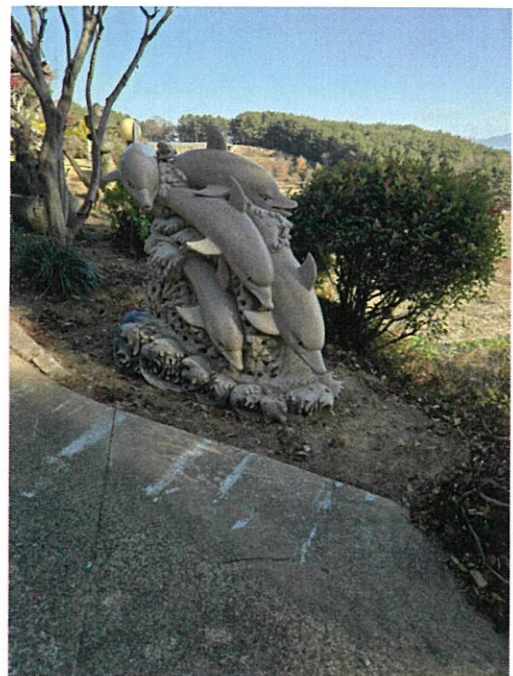
제시외건물 (15-6)



본 건(16)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본 건(17) 토지의 전경 및 수목 등



토지상의 조각품등의 전경